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
가. 법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1호	150만원
나. 법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2호	150만원
다.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3호	200만원
라. 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4호	100만원
마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5호	150만원
바. 법 제13조의2제1항·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6호	150만원